제8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0. 4. 29.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0년 4월 29일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원장 이 성 호 위 원 최 <u>호</u> 위 원 윤 석 헌 원 위 윤 면 식 위 원 위 성 백 위 원 심 위 원 영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 1) 2020년도 제5차부터 제7차 금융위 회의록 및 제1차 금융위 서면회의 회의록, 2020년도 제6차부터 제8차 금융위 안건 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 2020년도 제5차부터 제7차 금융위 회의록 및 제1차 금융위 서면회의 회의록, 2020년도 제6차부터 제8차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38호 **『금융위원회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정책홍보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 금융용어 순화 및 전문용어 표준화 마련 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훈령)을 제정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39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산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40호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산정시 차감항목에 대한 예외 적용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산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41호 **『한국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142호『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143호『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144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145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146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147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148호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149호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150호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151호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152호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153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154호 『한국거래소 분쟁조정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한국거래소의 회원관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거래소 규정 개정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규정변경 예고의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해 회원관리규정 등 14개 규정의 규정변경 승인을 신청한 내용
-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155호 『키움증권㈜의 ㈜디디아이에스에스에이치큐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키움증권㈜이 ㈜디디아이에스에스에이치큐위탁관리부동산투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되어 '금산법' 제24조에 따라 사후 출자승인을 신청한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워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56호 『하나금융투자㈜의 ㈜하나트러스트글로벌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하나금융투자㈜가 ㈜하나트러스트글로벌제1호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되어 '금산법' 제24조에 따라 사후 출자승인을 신청한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워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57호 『모놀리스자산운용㈜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모놀리스자산유용㈜이 재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58호 『㈜대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은 ㈜대구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159호 『하나금융지주㈜의 더케이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숭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 하나금융지주㈜가 더케이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제출한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을 승인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160호 『㈜JB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JB금융지주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된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한 사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 같은 경우 수익성에 기초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면 안 된다는 것에는 공감이 감.
 그런데 네거티브 기준이 있고 포지티브 기준이 있는데 네거

티브 기준은 '~하지 마라.' 이런 기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판단이 어려울 것 같음. 예를 들어서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준이면 좋겠다, 준법감시인은 어떤 내용으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시 같은 것을 줄 수는 없는지?

- (보고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문제제기 및 문의가 많이 있어서 관련 기준에 대해 이미 공문으로 송부했음. 금융회사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지표들이고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지표인지 다시 한 번 안내하도록 하겠음.
- (보고자) 위험관리자나 준법감시인 등에 대해서 대부분 회사 들은 정량지표보다는 정성지표를 주로 사용하고 정량지표는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161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금융회사가 해외진출시 신고·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
 - (위원) '해외지사 청산·변경시 신고·보고절차 간소화' 관련 신고내용에 '업무추가·변경,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 지사 확장·휴면 등'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나중에 검사 나가서 간혹 신고 누락으로 금융위에 상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텐데 우리가 꼭 신고받아야 되는 것인지? 1950년~1960년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날수 있어서 그런 것인데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의 경우에도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가끔 보면 해외지점 검사 나가서 1개월 내에 변경된 사업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19 같은 일이 생겨 1개월 하루 지나서 했다가 나중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까워 말씀드림.

- (보고자) 이것이 시행된 지 좀 되었음. 이런 정보들이 당초 부터 반드시 필요했는지 하는 점부터 살펴봐서 필요 없는 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하고 보고의무를 부과해서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음.
- (위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음. 중국에서 정보가 왔다고 그것을 꼭 신고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어 사무실을 옮길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한 달 안에 꼭 해 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도 보셔서, 이것이 또 사후보고의 무가 안 되어 과태료와 연결되면 어디까지는 과태료이고 어 떤 것은 도덕적인 의무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 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162호 『(경남)마산남성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163호 『(경기)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각각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상호금융 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경남)마산남성신협과 (경기)파주연천축협의 임직원이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부과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164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행정지도 정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등과 관련하여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165호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감독제도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 금융그룹감독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모범규준을 개정함과 동시에 1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 (위원) 그룹위험에 대한 평가체계를 디자인할 때 어려운 것은 있겠지만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이 가급적 각각의 변별력을 지닐 수 있도록 체계를 디자인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 그 점을 당부드림.

- (보고자) 세부방안을 수립할 때 그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그룹위험 평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위원)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해서 지금 개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의 내부거 래, 즉 상호연계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서 금융안 정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감독 및 평가하고, 또 그 평가결과 에 따라서 리스크를 잘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아까 제161호 안건에서 보고체계를 간소화하면서 금감원과 한은에 동시보고 하던 것을 금감원 보고로 일원화했지만 한은이 금감원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한은도 고유업무를 원활히 수 행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고 봄. 그리고 지금까지 금감원과 한은이 정보공유, 공동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감독정보를 관련 기관들과 공유하면서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라든지 정 책수행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협조에 대 해 감사드림. 이번에도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모범규준을 개정해 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양의 금융그룹에 대한 정보 가 입수되고 파악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금감원이 한국은행 을 포함한 금융안정유관기관에 정보를 잘 공유해 주신다면 업무수행에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음.
- (위원) 최근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 중앙은행 실물 기업에 대한 지원의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고 있음. 그것을 떠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금감원이 적극 협력하도록 하 겠음.

- (위원) 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 (보고자) 법제정을 전제로 해서 모범규준이 계속 연장되고 있음.
- (위원) 법이 제정되면 법에 다 들어가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3) 보고안건 심의
- □ 보고안건 제14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0년도 금융위원회 제8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6시 51분 폐회)